#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 270

발의연월일: 2024년 5월 13일

발 의 자: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: 김성기, 남진삼, 김광성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청년 인구의 정착유도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,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라. 지원대상, 지원 제외 대상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(안 제7조)
- 바. 지원중지, 환수조치(안 제8조 ~제9조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거기본법」,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, 「주거급여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, 「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」,

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: 2024. 4. 11. ~ 2024. 5. 1.(20일간),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4. 3. 28.~ 2024. 4. 8., 아래표 참조

원안(의회)	수정안(도시과)	검토 결과-부분수용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거기 본법」제3조에 따라 <u>평창군에 정</u> 착한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 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거기 본법」 제3조에 따라 <u>청년층의</u> 주거권 보장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전월세 보증 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(원안유지)  ① 안 제5조 관련, 국토부 사업의 청년 기준은 19세~34세로 해당 조례안의 청년 기준인 18세~49세보 다 대상이 한정적임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뜻은</u> 다음과 같다.	나이 기준의 조정없 이 대상을 가구로 확대할 시 대상이
제5조(지원대상) ① 1. <u>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</u> <u>택자일 것</u>	제5조(지원대상) ① 1.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 <u>택 청년일 것</u>	광범위하며, 부부가 구 비하여 주거지원 혜택이 적은 청년 단독가구에 대한 실 효성있고 집중적인
제6조(지원 제외 대상)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.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택 전세 자금 대출사업 및 월세 지원 대상자 5.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.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제6조(지원 제외 대상)  1.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주거급 여 수급자인 경우  3.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월세 지원대상자  5.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해당용도로 확인이 불가능한경우  6.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경우	지원을 위해 원안의 지원대상 기준을 유 지함 (의견참조) ① 안 제6조제3호와 제5호는 집행부 의 견을 참조하여 자구 를 수정함 -제3호: 국가 및 공 공기관 □ 국가, 지방
제7조(지원내용 및 지급기준) ① 지원금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3퍼센트로 하되, 최대 40 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2회 분할 하여 지급	제7조(지원내용 및 지급기준) ①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 일시 지급한다.	자 치 단 체 , 공공기관 -제5호: 주거자금으로 ▷ 주거자 금에 해당 하는 용도 로

- ② 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 지원 할 수 있다
-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.
- ② 지원금은 최대 2년까지 지원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 원공고를 할 때에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8조(지원중지) ①

- 1.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2조에 1.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2조제1 따른 '청년'의 범위를 벗어난 호에 따른 '청년'의 범위를 벗 경우
- 2.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5조에 2.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 못하거나 제6조의 지원 제외 대상 가 발생한 경우

#### 제8조(지원중지) ①

- 어난 경우
- 에 해당하게 된 경우

#### (수용)

- 안 제6조제1호 관련, 중복지원 및 지원금 지급으로 인 한 수급권 제외 사 안에 관하여 사업 시행 시 집행부에서 대상자에게 사전 안 내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을 수용함
- 그 외 안에 대하 여 집행부 수정안을 수용함

####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 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청년"이란 「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다.
  - 2. "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"란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예산 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4조(지원계획 수립)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지원대상)**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  - 1.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
  - 2. 평창군에 주소(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에 한함)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
  - ② 군수는 지원에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외

소득수준, 임대주택의 면적, 대출금액 상한, 대출 만료 기간 등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.

- **제6조(지원 제외 대상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.
  - 1.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
  - 2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-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 월세 지원 대상자
  - 4. 2촌 이내 혈족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  - 5.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에 해당하는 용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6.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**제7조(지원내용 및 지급기준)** ①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 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 일시 지급한다.
  - ② 지원금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공고를 할 때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8조(지원중지)**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.
  - 1.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'청년'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
  - 2.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

제6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

- 3.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거나 중도 상환하여 이자 납부의 의무가 없어진 경우
- ② 지원을 받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- 제9조(환수조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 결정을 취소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1.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
  - 2.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- <주 거 기 본 법> -

- 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  - 1. 소득수준·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 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  - 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**주거비의 우선지원**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**청년충**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**거지원이 필요한 계층**(이하 "주거지원필요계층"이라 한다)의 **주거수준이 향상**되도록 할 것
  - 3.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,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
  - 4.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
  - 5.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  - 6. 주거환경 정비,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
  - 7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  - 8. 저출산·고령화,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·경제적 변화에 선 제적으로 대응할 것
  - 9.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
- 제15조(주거비 보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 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## <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금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
  - 나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다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 업자
  - 라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업자, 투자자문 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
  - 마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바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  - 사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
  - 아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금융회사
  - 자.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금융지주회사
  - 차.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## <국민기초생활 보장법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수급자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#### <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>

- 제2조(공공임대주택) ① 「공공주택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
  - 1. 영구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
  - 2. 국민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

주택도시기금(이하 "주택도시기금"이라 한다)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- 3. 행복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 공임대주택
- 3의2. 통합공공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- 4. 장기전세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- 5.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: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- 6.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(이하 "기존주택등"이라 한다)을 매입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- 7.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(轉貸)하는 공공임대주택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<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>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년"이란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.

## <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>

- 제7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  - 2. 법령, 조례,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 - 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 - 4.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
  - 5.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  - 6.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7.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 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
- 제7조(지원내용 및 지급기준) ①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 일시 지급한다.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- ※ 사업시행 시 집행부에서 계획중인 연간 지원대상자 수는 20~30명으로 연간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

#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